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이렇게 실시합니다

- 2006년도부터 일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



목차

1.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은?	4
2.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은?	4
3.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주기는?	5
표1.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6
4.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
5.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되나?	7
표2.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 및 선택검사	7
6. 직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은?	8
7. 직업환경측정 평가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은 어떻게 하나?	8
표3. 건강관리 구분 판정기준	9

8.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 10

- 표4.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10
- 표5. 작업환경 개선 요령 10
- 표6.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11
- 표7.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11
- 표8.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제한기준 12

9.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특수건강진단결과는 언제, 어디로 보고하나? 13

10.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의 보존은 얼마동안 해야 하나? 13

- 표9.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유해물질 13

1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14

12.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4

- 붙임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16
- 붙임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77종) 17
- 붙임3. 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8

1.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은?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중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 **일반건강진단 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 일반인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2.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은?

작업환경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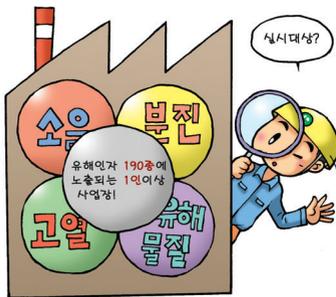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용,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붙임 1 참조)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의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주유소)

특수건강진단(규칙 제98조제3호)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붙임 2 참조)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는?

작업환경측정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됨)

특수건강진단

▶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부서 또는 유해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붙임1 참조)

※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주기의외/2)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② 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③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의 특수건강진단의 인정

- ①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함)
- ③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④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유해인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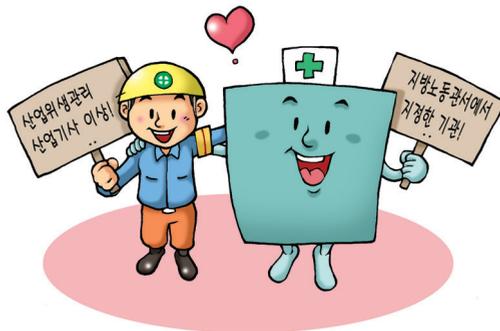


● 표1.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	
		배치 후 첫번째 실시 시기	두번째 부터의 실시 시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석면분진, 먼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 외한 별표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4.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에서 지정한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붙임 3 참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붙임 3 참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갖추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5.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되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p>▶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p>▶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 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 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p>▶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 표2.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 및 선택검사

구분	필수검사	선택검사
1) 산업의학적 진찰	과거력 및 폭로력 조사 과거병력(표적장기) 자각증상조사(문진표 등) 1차진찰	2차진찰
2) 공통임상검사항목	혈액학적 검사(혈색소, 혈구용적치) 요검사(단백뇨) 간기능검사(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3) 표적장기별 검사항목	시각 1차검사 청각 1차검사 호흡기 1차검사 심혈관 1차검사 간장 1차검사 신장 1차검사 혈액조혈기 1차검사 진동 1차검사 피부 1차검사 신경계 1차검사 구강 1차검사 기타 1차검사	시각 2차검사 청각 2차검사 호흡기 2차검사 심혈관 2차검사 간장 2차검사 신장 2차검사 혈액조혈기 2차검사 진동 2차검사 피부 2차검사 정신신경계 2차검사 구강 2차검사 기타 2차검사
4)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항목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

6.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계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분,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가 공개(개인정보 보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판정은 어떻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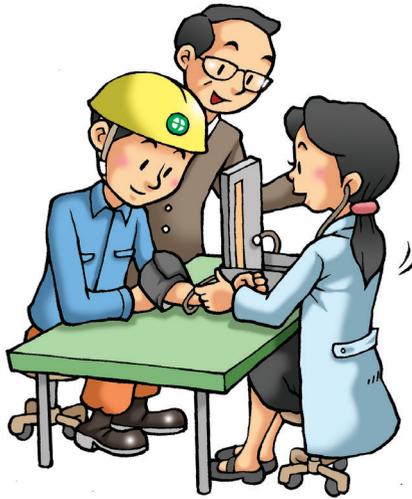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판정에 함함)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

● 표 3.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건강관리구분		기 준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C	C ₁ 직업병요관찰자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C ₂ 일반질병요관찰자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D ₁	직업병유소견자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D ₂	일반질병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R	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의심자 (제2차건강진단대상자)	제2차 건강진단 실시(대상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U'로 판정

註) 질병요관찰자(C)는 직업병(C₁) 및 일반질병(C₂)요관찰자로 구분



8.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

작업환경측정

● 표4.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표5.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칼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절한 작업량의 확보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 사업주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습관개선 또는 근무 중 치료 등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표 6)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이행

● 표6.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개별적 사후관리조치	집단적 사후관리조치
1. 건강상담	1. 보건교육
2. 보호구 지급	2. 주기단축(동일 공정·작업 전체)
3. 추적검사	3. 작업환경측정
4. 근무중 치료	4. 작업환경개선(시설·장비)
5. 근무 중 치료	5. 기타
6. 근로시간 단축	
7. 근로금지 및 작업전환(법제45조)	
8. 직업병확진이외 안내(건강진단기관이 안내)	
9. 기타	

▶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제한

- 사업주는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표 7) 판정에 따라 근로시간제한·단축, 근로금지 또는 작업전환 등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호조치에 대하여는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판정한 의사 및 근로자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양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하여야 함

● 표7.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가	현재의 조건하에서 현재의 업무가 가능
나	일정한 조건(작업환경 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업무가 가능
다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상태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애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적합성평가를 판정하여야 함

▶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에서 다음의 기준(표 8)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판정에 따라 해당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

● 표8.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업무제한기준

구분		제한업무
1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 노출업무
2	진폐의 소견(1형 이상)이 있는 근로자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 노출업무
3	방사선에 피폭된 근로자	방사선 노출업무
4	규칙 제117조 제2항 각호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 (감압증, 빈혈증, 정신신경증, 관절염, 천식 등)	고기압업무



9.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특수건강진단결과는 언제, 어디로 보고하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p>※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 물질은 30년)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외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10.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의 보존은 얼마동안 해야하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표 9의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서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표 9의 물질에 노출되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서류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부터 30년간 보존

● 표 9.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결과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유해물질

물 질 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아연, 오르토틸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폴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 3-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11. 직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직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직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직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미 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진단 별 각 최대 1,000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12. 직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

- ▶ **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
-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안전·보건 시설개선 비용지원(단, 주물·도금·피혁·염색·화학제품제조업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정보안내 : 노동부 (<http://molab.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clean.kosha.net>) 홈페이지 참조

□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소음 노출기준(90dB)초과 제조업체
- ▶ 지원내용 : 소음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정보안내 : 노동부(<http://molab.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 홈페이지 참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노·사 협의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50인 ~30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내용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정보안내 :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msd.kosha.net>) 홈페이지 참조

□ 소규모 영세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 지원대상 : '06년도 보건관리대행 국고지원 대상 사업장중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 ▶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 지원
- ※ 정보안내 :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 홈페이지 참조



● **붙임 1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구분	유해인자의 종류
화학적인자	<p>유기화합물(113종)</p> <p>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p-니트로아닐린, p-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디메틸아민,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에탄올아민, 디에틸렌 트리아민,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디에틸아민,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o-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디하이드록시벤젠,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메틸 아민,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n-부틸케톤, 메틸 n-아밀케톤, o-메틸시클로헥산,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클로로포름,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포탈릭 언하이드라이드, 벤젠, 1,3-부타디엔, sec-부틸알콜 (sec-부탄올), n-부틸알콜 (1-부탄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 메틸, 비닐 아세테이트, 사염화탄소, 스티렌,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날린과 아날린동족체, 아세트니트릴, 아세트,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에탄올아민, 에틸 벤젠, 에틸아민, 에틸 아크릴레이트,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렌아민, 2,3-에폭사-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콜, 이소아밀 알콜, 이소프로필 알콜, 이염화 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메틸, 초산 부틸,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초산 이소부틸, 초산 이소프로필, 초산 이소아밀, 크레올(모든 이성체),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클로로벤젠, 1,1,2-테트라클로로에탄, 1,1,2-트리클로로에탄,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톨루엔,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에틸아민,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스토다드 솔벤트, 프로필렌 아민, 피리딘, 하이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 헵탄, 황산디메틸, 상기 물질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p>
	<p>금속류(23종)</p> <p>구리(흙, 분진과 미스트),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원소, 가용성 무기화합물, 불용성 무기화합물, 니켈카르보닐),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백금(금속, 가용성 염), 산화마그네슘,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수은(알킬화합물, 아릴화합물, 원소 및 무기형태), 산화이연(흙, 분진), 안티몬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피로파우더, 흙, 가용성 염, 알칼, 요오드, 은(금속, 가용성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주석(금속, 산화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흙,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텅스텐(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가용성 화합물), 오산화비나듐(분진과 흙), 상기 물질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p>산 및 알칼리류 (17종)</p> <p>개미산, 과산화수소, 무수초산, 불화수소, 브롬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시안화칼슘, 아크릴산, 염화수소, 인산, 질산, 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황산, 상기 물질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p>가스상 물질류 (15종)</p> <p>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산화비스,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오존, 이황화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상기 규정 물질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p>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p> <p>디클로로벤젠디진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이온,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메틸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클다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상기 규정 물질 1% 이상 함유한 제제 및 벤조트리클로리드는 0.5%함유한 제제)</p>
물리적인자	<p>금속가공류(1종)</p> <p>소음 및 고열(2종)</p> <p>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p>
분진	<p>분진 (6종)</p> <p>광물성 분진(규산석영, 크리스토파라이트, 트리디마이트), 규산염(운모, 포틀랜드 시멘트, 슝 슝, 활석, 흑연, 기타 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연목, 강목), 용접흄, 유리섬유</p>

● 붙임 2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77종)

구 분	유해인자의 종류
유기화합물 (108종)	<p>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σ-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 n-부틸 케톤, σ-메틸 시클로헥산,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 스티렌,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질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 아세트,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 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사-1-프로판올,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염소화비페닐, 오라민,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 초산 이소아밀, 클타르, 크레졸, 크실렌,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bis-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벤젠, 테레핀유, 1,1,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톨루엔,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σ-프탈로디니트릴,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 피리딘, 하이드라진, 핵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핵산, 헵탄, 황산디메틸, 히드로퀴논, 상기물질 중량 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금속류 (19)	<p>구리(분진, 흙 및 미스트에 한함), 납(연과 그 무기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이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흙에 한함), 삼산화비스, 수은과 그 화합물, 안티몬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4알킬엔, 오산화비나듐(분진 및 흙에 한함), 요오드,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코발트(분진 및 흙에 한함), 크롬과 그 화합물, 텅스텐과 그 화합물, 상기물질 중량 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산 및 알칼리 (8)	<p>무수초산(무수 아세트익사이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황산, 상기물질 중량 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가스상 물질류 (14)	<p>불소, 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스, 시안화수소, 이황산가스, 염소, 오존, 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상기물질 중량 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허가대상물질 (13)	<p>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이연, σ-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강,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0.5%), 석면, 상기물질 중량 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p>
금속가공유 (1)	<p>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p>
분진 (6)	<p>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목분진, 용접 흙, 유리섬유 분진</p>
물리적 인자 (8)	<p>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p>

● 붙임 3 : 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관서별 가나다순)

지방노동관서명	작업환경측정기관명	연락처	특수건강진단기관명	연락처	
서울청	서울청 (02)2250-5770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고대병설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의학연구소	02)958-8701 02)917-0603 02)740-8883 02)739-0191	상성의료재단 갑북상생병원 하나로의료재단 하나로의원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중부의원	02)2001-2653 02)732-3030 02)739-0191
	서울강남 (02)598-1671~3	정해복지부설 한산메디피아의원	02)3481-1121	정해복지부설 한산메디피아의원	02)3481-1121
	서울동부 (02)242-8871	고대병설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소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920 02)917-0603	하나로의료재단 하나로의원 한양대학교병원	02)732-3030 02)2290-8920
	서울서부 (02)701-1320	가톨릭대 의대 산업의학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 병원	02)3779-1407 02)866-9507 02)709-9456	순천향대학교 병원	02)709-9456
	서울남부 (02)2675-9101~2	가톨릭대 의대 산업의학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림대 산업의학센터	02)3779-1407 02)866-9507 02)6277-0118 02)2639-5524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02)3779-1413 02)2639-5522
	서울북부 (02)963-0145~6	경희대학교부속병원 고대병설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02)958-8701 02)917-0603 02)490-209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02)958-8701 02)490-2110
	서울관악 (02)3281-5021	광명성애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정해복지부설 한산메디피아의원 청룡환경 한림대 산업의학센터	02)2680-7171 02)866-9507 02)3481-1121 02)851-3811 02)2639-5524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02)866-9507
	의정부 031)861-8851~2	경기산업보건센터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고대병설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031)871-5671 02)958-8701 02)917-0603 031)877-4171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02)958-8701 031)877-4174 031)871-5671
	춘천 033)258-3581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031)877-4171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 연세대 원주이대 원주기독병원	031)877-4174 033)741-1670
	태백 033)552-8603~4	대한광업진흥공사 신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2)840-5798 033)530-3256	신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033)580-3333
강릉 033)646-2515~6	신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33)530-3256	신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33)530-3100	
원주 033)744-3370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산업보건센터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031)267-4400 033)741-0346 031)421-7430	연세대 원주이대 원주기독병원 신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33)267-4400 033)530-3256	
영월 033)374-1724~5	대한광업진흥공사 신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02)840-5798 033)530-3256	신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동아대학교 병원	033)580-3333 051)240-5310	
부산청	부산청 051)851-7420~1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동아대학교병원 동남환경 인제대 부산백병원	051)508-6088 051)240-5310 051)816-9515 051)890-631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51)890-6301
	부산동래 051)552-3025~6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인제대 동래백병원	051)508-6088 051)607-8271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	051)508-6088 051)607-8271

지방노동관서명	직업환경측정기관명	연락처	특수건강진단기관명	연락처	
부 산 청	부산북부 051305-351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남환경 동아대학교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051)990-6691 051)816-9515 051)240-5310 051)890-631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051)990-6691
	창 원 055)289-6609~10	대한산업보건협회 마산산업보건센터 삼성환경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신조환경보건컨설팅 창원피티마병원	055)295-2461 055)255-4793 055)280-0398 055)276-4456 055)270-1051	대한산업보건협회 마산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삼성의료재단미산삼성병원 창원피티마병원	055)295-2461 055)282-5111 055)290-6265 055)270-1050
	울 산 052)228-1881~9	굿모닝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동강병원 환경의학연구소	052)259-9199 052)275-6322 052)241-1381	굿모닝병원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울산대학교 병원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052)259-9199 052)241-1383 052)275-6162 052)250-8340 052)266-1100
	진 주 055)752-1752	경상대 산업의학연구소	055)751-8776	진주고려병원 산업의학연구소	055)751-2412
	양 산 055)387-0805	김해중앙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삼성병원 인제대 김해산업보건센터 허니환경보건컨설팅	055)330-6066 055)337-0620 055)384-9901 055)327-7813 055)345-2547	김해중앙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삼성병원 인제대학교부설 김해산업보건센터	055)330-6065 055)337-0620 055)384-9901 055)332-7811
	통 영 055)643-2467	대우병원	055)680-8708	대우병원	055)680-8715
	대 구 청	대 구 청 053)753-4909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기톨릭대 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성서병원 영남대 의대	053)250-7780 053)582-1949 053)856-1211 053)584-6657 053)620-4616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기톨릭대 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성서병원 영남대 의대
대구북부 053)321-6712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기톨릭대 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성서병원 영남대 의대	053)250-7780 053)582-1949 053)856-1211 053)584-6657 053)620-4616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기톨릭대 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부 성서병원 영남대 의대	053)250-7780 053)582-1949 053)856-1211 053)584-6657 053)620-4616
포 향 054)275-6875		굿모닝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동국대 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 한동대 선린병원	054)744-9041 054)770-8427 054)288-2041 054)272-0151 054)245-5253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포항성모병원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054)770-8425 054)288-2039 054)289-4389 054)245-5256
구 미 054)456-4676~7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054)468-9451 054)450-9852	구미고려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자방공사 김천의료원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054)450-7527 054)463-7151 054)429-8246 054)450-9839
영 주 054)634-0913		문경제일병원 인동병원	054)550-7712 054)820-1507	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지방노동관서명	작업환경측정기관명	연락처	특수건강진단기관명	연락처	
경 인 청	인동성소병원	054)850-8168			
	안 동 054853-0009	인동병원 인동성소병원	054)820-1507 054)850-8168	인동병원 인동성소병원	054)820-1507 054)850-8168
	경 인 청 032)421-4721~2	강화병원 산업보건센터 길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 신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이주산업의학연구소 연세대 인천세브란스병원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 재능대학 보건환경연구소 한국안전환경연구원	032)326-0035 032)816-9012 032)500-0251 031)497-5980 032)582-3001 032)890-2689 032)890-7206 032)811-6600	길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 인하대 의대 부속병원	032)814-9011 032)890-2861
	인천북부 032)556-0933~7	가좌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 강화병원 산업보건센터 길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 신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이주산업의학연구소 연세대 인천세브란스병원 인하대의대 부속병원	032)583-7114 02)3779-1407 032)326-0035 032)816-9012 032)500-0250 031)497-5980 032)582-3001 032)890-2689	가좌성모병원 강화병원 신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연세대 인천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032)583-7114 032)326-0035 032)500-0244 032)582-3001
	수 원 031)259-0251~3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센터 동수원병원 빅아병원 수원중앙병원 이주대학교 병원 오산서울병원 오산한국병원 연세모두병원 산업의학센터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화성중앙병원	031)267-4400 031)210-0285 031)652-0607 031)229-9583 031)219-5290 031)375-1727 031)379-8650 031)757-4225 031)321-7430 031)352-8101	굿모닝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센터 동수원병원 빅아병원 수원중앙병원 이주대학교 병원 오산서울병원 오산한국병원 화성중앙병원	031)659-7700 031)267-4400 031)210-0285 031)652-2121 031)229-9570 031)219-5642 031)375-0081 031)379-8650 031)352-8101
	부 천 032)323-9823~4	가톨릭대의대 산업의학센터 강화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니얼병원 신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허나성심병원	02)3779-1407 032)326-0035 02)2680-7171 032)677-9333 032)500-0250 02)709-9456 031)996-1390	대성병원	032)610-1303
	안 양 031)466-2622~3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이주산업의학연구소 인양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성산업의학연구소	02)2680-7171 031)467-9000 031)497-5980 031)467-9252 031)380-1587 031)458-3646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인양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성의원	02)680-7367 031)467-9000 031)467-9114 031)380-1500 031)458-3646
	안 산 031)412-1970~8	광명성애병원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02)2680-7171 031)430-5787	광명 성애병원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부설 의원	02)2680-7171 031)430-5770

지방노동관서명	직업환경측정기관명	연락처	특수건강진단기관명	연락처
경인청	고려대대인 안산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산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인산중앙병원 시화병원 아주산업의학연구소 안산한도병원 제일산업의학연구소 한국안전환경연구원	031)412-5398 031)498-1063 031)500-1114 031)432-2600 031)497-5980 031)482-0114 031)433-9241 031)237-211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산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인산중앙병원 시화병원 아주산업의학연구소 인산 한도병원 제일산업의학연구소	031)512-5390 031)498-1063 031)406-2991 031)432-2600 031)497-4790 031)485-1030 031)433-9241
	성 남 031)749-0270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금강산업보건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산업보건센터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장해복지부설 한스메디피아의원 진성연세모두병원 충무산업환경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금강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산업보건센터 장해복지부설 한스메디피아의원 진성연세 모두병원	02)958-8701 031)631-0697 031)217-2100 031)321-7430 02)3481-1121 031)702-5265 031)702-3506
	광 주 청 062)227-3814	광주 김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산업보건	광주 김병원 간강증진의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 병원 한국연합의원	062)223-8125 062)522-6053 062)521-9465 062)220-5114 062)269-2100
	전 주 063)245-2088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아산재단 정읍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063)225-1242 063)530-6612 063)251-8067
	목 포 061)283-7814	광주 김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목포중앙병원	광주 김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062)223-8125 062)956-9012 061)280-3780
	여 수 061)651-6885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순천금당병원 순천제일대학 직업환경기술연구소 여수성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사구료재단 성산병원 순천금당병원	061)720-7575 061)720-3500 061)740-1359 061)651-4701
	익 산 063)839-0031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원광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063)225-1242 063)850-1219 063)251-8067
	군 산 063)450-0550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063)225-1242 063)251-8067
	제 주 064)755-0453~4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한국산업보건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062)956-9012 062)269-2300
	대전청	대전청 042)480-6301~9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엘지이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엘지이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청 주 043)299-1314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043)263-7137 042)670-5193

지방노동관서명	작업환경측정기관명	연락처	특수건강진단기관명	연락처
대전 청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다스코리아	042)259-1570 042)477-9633 043)842-6054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042)259-1570 042)477-9633
	천 안 041)560-2861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천안산업환경 천안총무병원 한국안전환경연구원 현대병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신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순천향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의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천안총무병원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현대병원	041)550-6780 042)933-3200 042)670-5191 041)570-0531 041)570-2083 041)570-7561 042)477-9633 041)546-1637
	충 주 043)851-4545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다스코리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음성중앙성심병원	043)840-8401 043)263-7137 043)842-6054
	보 령 041)830-6140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병원	042)933-3200 042)259-1570 042)477-9633



